

제 827 호
1981. 2. 2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492 호 :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 3
◎ 규 칙	
제 1895 호 :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5
제 1896 호 :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8
제 1897 호 :	서울특별시외자도입심의회규칙중개정규칙 10
◎ 고 시	
제 52 호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인가 11
제 5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7
제 5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309

◎ 공 고

제 49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시행 (추가)	
	공람공고	18
제 50 호 :	특정연사용기 자재시공업지 권역소공고	23
제 51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 정지 변경 지정공고	24
제 52 호 :	도시계획사업 (광장 및 가각) 실시계획 공람공고	24
제 53 호 :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25
제 64 호 (동대문공고) :	공인개각공고	25
제 34 호 (강남구공고) :	공인개각 사용공고	26

◎ 사 명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제 3조 (구설) ①위원회는 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2월 24 일

◎조례 제 1492 호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인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시정의 기본정책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장단기 정책발전계획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3. 시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4. 새로운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평가 및 봉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구설)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및 감사위원을 포함하여 100인내지 2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및 제2부시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2명을 위촉하되 1인은 대학교수로, 1인은 주민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대학 또는 대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사업우와 판린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계전문가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당해위원과 그 소속대학 및 기관의 강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

<p>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하되 제 1부시장이 우선한다</p> <p>제 5 조 (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책과제의 용역관리 및 공직자 대학출강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p> <p>②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위원은 시에 파견근무하며 근무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원 소속 기관에 복귀한다.</p> <p>제 6 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 7 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분과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p> <p>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⑤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8 조 (회의) ①위원회는 년 4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p> <p>제 9 조 (사무보조)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시공무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위원의 대우)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감사위원에게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11 조 (자료제출과 협조요구) ①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연구 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구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p> <p>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권행정자문위원회 조례 2. 서울특별시정평가교수단 조례
---	---

- 3. 서울특별시한강보건위원회 조례
- 4. 서울특별시성곽북원위원회 조례

규 칙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2월 24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95 호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 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교통관광분과위원회
- 2. 보건사회분과위원회
- 3. 건설분과위원회
- 4. 주택분과위원회
- 5. 공해대책분과위원회
- 6. 상수도분과위원회
- 7. 하수분과위원회
- 8. 조경녹화분과위원회

7. 문화공보분과위원회

10. 민방위분과위원회

11. 운동장건설분과위원회

12. 서울대공원건설분과위원회

13. 행정관리분과위원회

14. 치안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기획관리관이, 서기는 기획담당관이 되고 각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주무과장이 된다.

제 4 조 (교통관광분과위원회) 교통, 관광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통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운수업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 4. 시민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 (보건, 사회분과위원회) 보건사회분과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p>3. 방역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p> <p>4. 영세민 구호에 관한 사항</p> <p>5. 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p> <p>6. 부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p> <p>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는 사항</p> <p>제 9 조 (상수도분과위원회) 상수도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3. 수도요금 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6 조 (건설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의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지하철건설계획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지하철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10 조 (하수분과위원회) 하수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 치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하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3. 한강변 제방수문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7 조 (주택분과위원회) 주택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 주택에 관한 사항 2. 아파트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불량건물 정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11 조 (조경녹화분과위원회) 조경녹화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 및 녹지조경에 관한 사항 2. 남산 보호에 관한 사항 3. 외국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8 조 (공해대책분과위원회) 공해대책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한강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소음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는 사항</p>

제 12 조 (문화공보분과위원회) 문화공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계획에 관
한 사항
2. 문화사업육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개발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사항
5. 종교 및 문화 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6.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 13 조 (민방위분과위원회) 민방위분
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원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행정의 강화 및 개선에 관
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 14 조 (운동장건설분과위원회) 운동
장건설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 15 조 (서울대공원건설분과위원회) 서
울대공원 건설 분과위원회의 직무
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대공원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설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 16 조 (행정관리분과위원회) 행정
관리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개선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2.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과제의 연구유역관리에 관
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 17 조 (치안분과위원회) 치안분과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치안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3. 민경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
시에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수도 행정자문위원회조례 시행
규칙
2. 서울특별시정 평가교수단조례
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한강보전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운영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대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96 호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운영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운영규칙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제 1 항 중 별표 2, 제 9 조 중 별
표 6 및 제 10 조 제 1 항 중 별표 7 을
별지 1, 별지 2, 별지 3 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별표 2> 급 여 월 액

(단위: 원)

(단위: 원)			호봉	교 양 악 단	기 타 예 술 단 체
호봉	교 양 악 단	기 타 예 술 단 체			
			17	277,000	142,000
정	404,000		18	268,000	135,000
1	377,000	268,000	19	259,000	129,000
2	372,000	258,000	20	251,000	123,000
3	366,000	247,000	21	243,000	116,000
4	340,000	235,000	22	239,000	105,000
5	354,000	224,000	23	230,000	92,000
6	348,000	213,000	24	222,000	
7	343,000	206,000	25	216,000	
8	337,000	200,000	26	204,000	
9	331,000	192,000	27	192,000	
10	326,000	185,000	28	175,000	
11	319,000	179,000	29	160,000	
12	313,000	173,000	30	143,000	
13	306,000	166,000	31	126,000	
14	298,000	159,000	32	116,000	
15	291,000	153,000	33	105,000	
16	283,000	149,000	34	92,000	

<별표6> 직책수당 (단위: 원)

(단위: 원)			구분	인원	실직책수당
구분	인원	실직책수당	국가관련악단지휘자	1	85,000
교향악단상임지휘자	1	85,000	악장	2	65,000
지휘자	1	75,000	수석	4	55,000
악장	2	65,000	부수석	4	35,000
총무	1	65,000	기타단체지휘자(한우자)	4	65,000
제1수석	9	55,000	가부단연출자	1	35,000
제2수석	8	45,000	기타단체수석	8	12,000
제1부수석	8	35,000	부수석	8	10,000
제2부수석	7	25,000	총무	4	45,000

<별표7> - 예능연구보조비월액 (단위: 원)

(단위: 원)			호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호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17	135,000	71,000
점	213,000		18	132,000	68,000
1	197,000	136,000	19	129,000	64,000
2	192,000	131,000	20	125,000	60,000
3	188,000	125,000	21	121,000	57,000
4	184,000	120,000	22	120,000	47,000
5	180,000	114,000	23	117,000	45,000
6	176,000	107,000	24	114,000	
7	171,000	104,000	25	109,000	
8	167,000	100,000	26	104,000	
9	163,000	98,000	27	98,000	
10	158,000	95,000	28	89,000	
11	155,000	91,000	29	79,000	
12	151,000	87,000	30	73,000	
13	148,000	84,000	31	61,000	
14	146,000	81,000	32	57,000	
15	141,000	77,000	33	47,000	
16	139,000	75,000	34	40,000	

서울특별시 외자도입심의회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1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897 호

서울특별시외자도입심의회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외자도입심의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중 "위원회"를 "심의회"라 한다.

제 2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 2 (사전검토) 외자를 도입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할 경우에는 구매요청서에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 1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재무국장, 세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반계국장 (직할사업소장 포함)이 되며 위원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 3인 이내에서 별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중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예산 2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 1담당관, 회계 1과장, 보건행정과장, 상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업무과장과 관계과장이 된다.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심의특등) ①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권의 하여야 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감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감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감사는 예산 2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예산관리계장이 된다.

②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감사를 보좌한다.

제 9 조 및 제 10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9 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 52 호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 호 (81.2.23) 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수산물종합도매시장건설사업소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기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2.25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298-1 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설비)

사업의 명칭: 동수산물종합도매시장

3) 면적 또는 용도 - 부지 면적: 547,255㎡ (155,547평)

- 연건평: 215,475㎡ (65,181평)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81.2 ~ 8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반, 지목 및 소유권이 속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다음

토지조서 (수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서울시강동구가락동 235	답	263	서울시성동구담호동 2가 486	남경우	
" " 239	"	808	" 성북구종암동 9-101	김용현	
" " 271	잡	509	" 종로구육인동 45-5	김공철	
" " 279	"	1,124	" "	"	
" " 282-1	"	2,154	" "	"	
" " 283-2	"	4,084	" "	"	
" " 284-2	"	2,239	" "	"	
" " 285-2	"	1,517	" "	"	
" " 311	"	6,179	" "	"	
" " 553	"	1,861	" "	"	
" " 575	"	866	" "	"	
" " 278	"	2,261	" 동대문구창신동 330-1	이정자	
" " 288-3	"	113	" "	"	
" " 635	"	659	" "	"	
" " 637	"	7,507	" "	"	
" " 653	"	3,190	" "	"	
" " 599	"	2,410	" "	"	
" " 319-3	답	1,792	" 성북구장위동 68-515	임채형	
" " 319-4	"	249	" "	"	
" " 319-5	"	733	" "	"	
" " 323-1	전	14	경기도성남시태평동 86-3	김형호	
" " 323-3	"	67	" "	"	
" " 323-4	"	53	" "	"	
" " 560	"	20	서울시강남구일원동 70	김천분	
" " 561	"	136	" "	"	
" " 562	"	73	" "	"	
" " 272	잡	1,977	" 동대문구용두동 152-14	이영주	
" " 273	"	3,025	" "	"	

목록과 소유자 및 관계인)

관 계 인		소유권이외권리당세		비 고
주 소	성 명			
성동구마장동 473-11 없 음	장안평농지개발조합 없 음	압류 (조합비채납) 없 음		
종로구옥인동 45-5 없 음	김 대 중 없 음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권리자) 없 음		
종로구옥인동 45-5 없 음	김 대 중 없 음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권리자) 없 음		
종로구옥인동 45-5 없 음	김 대 중 없 음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권리자)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소 재 지	지 북	지 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277	전	1,656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2-10	서 정 훈
" " 563	"	1,279	" "	"
" " 602	"	85	" 도봉구 미아동 839-43	박 효 성
" " 654	"	35	" "	"
" " 214-10	답	955	" 성북구 정릉동 402-152	이근영외 2인
" " 263-1	"	1,620	" 성북구 정릉동 508-21	김 승 모
" " 265	"	3,360	" 동대문구 재기동 122-14	김 북 남
" " 289-33	"	1,643	" 종로구 명륜동 3가 2-1	장 철
" " 335-3	답	4,058	" 용산구 원효로 1가 26-33	조 용 철
" " 554	전	2,221	" 마포구 공덕동 224	김 화 경
" " 557	"	1,296	" 성북구 성북동 31-3	심 상 국
" " 559	전	1,494	" 마포구 신수동 449-4	이 기 태
" " 569	"	2,899	" 마포구 서교동 478-1	편 홍 의
" " 58'	"	98	" 동작구 상도 1동 58-9	최 성 복
" " 596	"	2,410	" 종로구 옥인동 45-5	김 대 중
" " 598	"	2,056	" 강동구 가락동 82	윤 준 우
" " 750	잡	4,218	" 성북구 정릉동 403-5	이 제 훈
" " 760	전	1,957	" 성북구 종암동 10-162	김 차 원
" " 341-35	구거	14	" 성동구 마장동 473-11	장인영등 4명외
" " 595	전	165	없 음	없 음
" " 638	도로	40	" "	"
" " 639	"	248	" "	"
" " 321-10	잡	215	" 성동구 마장동 473-11	장인영등 4명외
" " 336-2	구거	89	" "	"
" " 240-1	답	3,405	" 성북구 종암동 9-101	김 용 현

관 계 인		소유 권 이 의 권 리 명 세		비 고
주 소	성 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도봉구미아동 41-3	오 주 경	가등기 (매매약, 소유권이전, 창구권권리자)		(미등기) 최병천, 김은옥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성동구 마장동 473-11 서대문구 불광동 259-10 성동구 마장동 473-11 없 음	장인영농지개발조합 강 흥 민 장인영농지개발조합 없 음	압류 (조합비채납) 가 치 분 압 류 없 음		서울시시세채납
중구양동 286 종로구판철동 10 없 음	신용보증기금 한국의환은행 없 음	가 압 류 지상권설정, 임의경매신청. 없 음		근저당설정
중구남대문 744-21 종로구명륜동 3가 60-18 없 음 없 음	효성물산(주) 권 오 환 없 음 없 음	가 등 기 가 압 류 없 음 없 음		미부구지역 (미등기) 지적법시행령부칙 제 6 조 해당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지 장 불 조 서

연번	위치 및 면적	품명	수량	소유자	성명	비고
1	강동구 가락동 677, 680, 692	벽오동	272	성동구 중곡동 341-7	한문기	
2	"	푸라다나스	341	"	"	
3	"	백목련	1	"	"	
4	"	단풍	1	"	"	
5	"	서철나무	1	"	"	
6	"	가이스카	1	"	"	
7	"	희나무	12	"	"	
8	"	철문	1	"	"	
9	"	담장	80 m	"	"	
10	가락동 762, 763	오과	50	중구 필동 3가 63번지	강병훈	
11	"	구기과	160	"	"	
12	"	원두층	15	"	"	
13	"	견포도	43	"	"	
14	"	잣나무	3	"	"	
15	"	양살구	16	"	"	
16	"	배나무	101	"	"	
17	"	느티나무	10	"	"	
18	"	단풍	112	"	"	
19	"	철죽	20	"	"	
20	"	벽오동	7	"	"	
21	"	오동	1	"	"	
22	"	매타세코야	7	"	"	
23	"	등나무	1	"	"	
24	"	가이스카	4	"	"	
25	"	벗나무	15	"	"	
26	"	매화	10	"	"	
27	"	앵두	1	"	"	
28	"	은행	4	"	"	

연번	위치 및 번지	품명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9	가락동 762, 763	부사사과	3	강구별동 3가 63번지	강병훈	
30	"	해당화	38	"	"	
31	"	지포약근초	320㎡	"	"	
32	"	담장	300m	"	"	
33	556, 600	비닐하우스	10동 2,823㎡	강동구 오금동 403	이연세	
34	760	"	4동 1,187㎡	" 가락동 24동	최영만	
35	"	지하수펌프	27개			

◎ 서울특별시 고시제 5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02 호 (80.3.14) 로 시설결정 및 동고시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학교) 시행허가하였음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착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1. 2.2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당동 신 9 번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신사당
국민학교
 - 다. 사업규모및면적 : 11,032 ㎡
 -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준공 : 1983. 2.28.
 - 바. 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능,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첨 (생략)
 - 사. 위치및경면도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제 5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지정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31 호 (81.2.4)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틀 고시함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 2.2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위치 : 강서구목동 115번지 ~ 신정동 27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화교 ~ 팔산간 도로정비공사
3. 사업규모
가. 도로포장 : $B=7m$ $L=5,421m$ $A=362.7a$
4.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1.9.3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49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시행 (추가)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0 호 (80.11.

24) 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434 호 (80.12.30) 로 변경결정 및 동고시 제 4 호 (81.1.15) 로 변경 지정승인된 강남구 포이동 염곡동일대 동산마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시행 (추가) 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2.24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포이동 7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 나. 사업규모 : 1) 당초 : 42,225 제곱미터
2) 변경 : 59,912 제곱미터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동산마을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강남구포이동 75 번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이인규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에정일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p>변경없음 (당초) (변경) 2) 준공예정일 '81.6.30 '81.12.31 바. 사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p>	<p>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의 주소, 성명 아. 농간기간 : 공고인으로부터 1년 이내 자. 기타자세한 사항을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로 문의 할것.</p>
---	--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전 입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포이동	65	전	732	184	보광 265-76	노성호의 1인
"	55-3	도	444	30		서울시
"	68	전	2,989	1,086	해화 4-7	김진천
"	68-7	도	136	87		서울시
"	69	전	79	27	해화 977	김진연
"	70-1	"	945	945	제동 67-22	유재완
"	- 2	대	856	544	상도 1동 404-4	정재천
"	- 3	전	2,000	1,472	포이동 72	김숙자
"	- 4	"	539	539	"	"
"	- 5	"	182	179	중록 53-2	이원석
"	- 6	"	502	592	동순 129-117	김동환
"	- 7	구	172	172		서울시
"	- 8	대	208	208	포이 72	이영범
"	- 9	전	294	294	잠실 3동주공아파트 130-201	이계웅
"	-10	"	79	79	포이 72	이영범
"	-12	"	172	172	도곡 202-61	김재근
"	-13	"	155	138	공덕 437	김수원
"	-14	"	1,266	1,195	포이 70-14	장경택
"	-15	"	1,266	1,195	포이 72	천찬국

등 명	지 번	지 역	면 적	면 일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포이동	70-11	대	20	20	중곡 53-2	이 원 식
"	-17	전	410	410	숙번 117-65	최 은 대
"	-18	"	965	965	중곡 53-2	이 원 식
"	-19	"	370	370	쌍문 530	박 형 관
"	71-1	대	486	486	포이 175	이 중 욱
"	-2	전	2,131	2,673	포이 175	이 중 식
"	72-1	대	426	426	포이 72	최 찬 욱
"	-2	"	218	218	"	황 지 연
"	-3	"	456	456	동순 129-94	김 관 창
"	-4	"	655	655	약수 392-782	박 영 숙
"	-5	"	251	251	포이 72	강 장 순
"	-6	"	89	89	" 72	천 명 숙
"	-7	"	446	446	" 72	권 영 국
"	-8	"	433	433	" 72	천 자 근
"	-9	"	301	301	"	권 오 철
"	-10	"	588	588	"	최 창 연
"	-11	"	483	483	"	최 윤 철
"	-12	"	324	324	"	오 범 석
"	-13	"	112	112	"	이 봉 기
"	-14	"	205	205	"	권영규 외 4인
"	-15	답	565	565	돈암 19-202	이 신 자
"	73-5	"	172	172	동선 7-7	홍 재 순
"	74-3	전	512	213	포이 72	차길연 외 3인
"	-6	"	185	185	개포 666	이 철 봉
"	-7	"	179	179	포이 72	양 경 원
"	75	대	1,101	1,101	포이 75	이 인 규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포이동	76-1	대	407	370	포이 75	이종식	
	-2	입	2,112	630	"	"	
	73	전	1,193	1,193	압구정산 6-1 한양아파트 7 동 906	오광인의 1인	
	77-2	"	460	202	포이 75	이종익	
	79-4	"	2,093	1,859	남창 205-49	송명익	
	-5	"	317	13	포이 79-5	노윤영	
	-6	"	317	93	쌍문산 120-11	조정배	
	-7	"	863	520	포이 72	허경산	
	염곡동	335	"	2,463	2,234	"	"
		335	"	3,650	2,617	"	허운철
336-19		도	122	107	"	서울시	
337		답	150	1,119	화성군오산면오산리 612	이창걸의 5인	
337-8		구	2,796	2,796	"	국유지	
336-13		도	348	226	"	서울시	
334-3		전	695	222	염곡 254-1	임원초	
361-1		답	298	164	" 361-1	김교임	
-2		"	430	430	포이 72	장순자	
-3		"	502	184	논현 351-5	김복동의 1인	
362-1	"	453	453	포이 72	허운철		
-2	"	2,278	339	구의 30-42	이영설의 1인		
363-1	대	248	25	포이 72	조종식		
364-1	답	1,967	4	신논로 1가 1-109	서명식		
-2	"	1,914	540	"	"		
-3	"	1,762	127	역삼 114-3	서창우의 1인		
375-1	"	493	493	북아현 3-63	최형목		
-7	대	407	407	역삼 218-1	유기용의 1인		
-9	"	661	634	동소문 421-93	황중웅		
-10	"	403	403	포이 72	허경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염곡동	375-10	대	403	215	포이 72	허정철
"	-11	"	258	240	모진 93-13	최죽송
"	12	"	210	49	도곡 192	임학연의 1인
"	376	답	479	479	모진 93-3	더죽송
"	377-3	"	612	612	용암 397-95	이종기
"	-4	"	291	291	포이 72	허윤식
"	-5	"	271	271	한남 736-12	유정자
"	360-2	"	1,464	384	포이 72	유찬욱
"	338-1	"	2,258	2,138	혹석 235-8	윤경준
"	-2	"	1,818	1,030	포이 72	천자근
"	-3	"	2,688	908	"	"
"	-4	건	1,342	66	논현 144-2	한필호
"	339	"	737	737	합정 91-10	김학수
"	341	"	1,693	524	역삼 213-2	유기용
"	340	"	1,193	722	열린 27-46	한성운
"	361-5	답	49	49	형촌 180	지순일
"	-24	"	240	240	화곡 347-17	김용근
"	363-2	"	1,091	1,091	정릉 192-215	이필규
"	363-6	"	1,164	546	여의도 1-989	원수원
"					삼부아파트 9동 152호	
"	375-5	"	2,066	664	연희 192-8	박동희
"	-8	"	2,496	427	"	"
"	363-3	"	476	466	포이 72	황지연
"	-4	"	383	20	이촌 302-86	서영순
"	-5	"	430	103	경복아파트 동 1005	김홍수
"	360-1	"	400	400	포이 72	천찬욱
"	375-10	"	403	215	"	최경철
"	-11	대	258	249	모진 93-13	최죽송
"	-12	"	210	210	도곡 192	임학연의 1인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성 명
염곡동	361- 4	답	731	731	포이 72	장 순 지	지
"	336	건	3,650	817	"	허 윤 철	철
"	-19	도	122	107		국 유 지	지
"	337	답	1,501	382	화성군오산면오산리 612	이상길의 2인	인
"	- 8	구	2,796	281		국 유 지	지
"	334- 3	건	695	222	서린 254-1	임 원 초	초
"	361- 3	답	582	268	논현 351-6	김 복 동	동
"					대방 338-11	한 상 문	문
"	362- 2	"	2,278	1,327	역삼 452	이영섭의 2인	인
"	364- 1	대	248	172	포이 72	조 종 식	식
"	- 1	답	1,987	821	신문 2가 1-109	서 병 식	식
"	- 2	"	1,914	323	"	"	"
"	- 3	"	1,762	864	"	"	"
"	375-10	"	403	51	포이 72	허 경 철	철
"	-12	대	210	110	도곡 193	최 이 순	순
"	362- 1	답	453	22	포이 72	허 윤 철	철

◎ 서울특별시 공고제 50 호

특정 열사용기 자체시공업 지정 취소 공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특정 열사용 기 자체시공업 지정

을 취소하였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1.2.25.

서울특별시 장

다 음

지정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취 소 사유
중구제 36 호	삼 경 사	무학동 1 번지	김현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위반

지정번호	업제명	소재지	대표	취소사유
중구제 40 호	보선기업(주)	북정동 27-10	이상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위반
41 호	성남화학설비기업	중림 28-1	장국남	·
43 호	현대시설센터	강릉동 1 가 57-6	박주한	·
51 호	원풍설비(주)	울지로 3 가 295-4	지육근	·
55 호	세광종합설비 엔지니어링	영동 2 가 31-1	경수웅	·
62 호	유일교역상사	저동 2 가 48-20	조한국	·
69 호	동아공업	울지로 3 가 295-4	남상웅	·

◎서울특별시공고제 51 호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
예정지 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제 398 호 (80.12.30) 로 환지계획변경공고한 영동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행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1.2.25

서울특별시장

- 환지예정지 변경내역 -

- 가. 사업명: 영동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10,282 평
- 다. 변경위치: 강남구잠원동 52 의 73 필

◎서울특별시공고제 52 호

도시계획사업 (광장 및
가각) 실시계획
공람공고

1. 당사에서 시행중인 원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대로포장 공사에 따른 광장 및 가각 정리를 위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광장 및 가각)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자 동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공람 시킨다.

2. 관계문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할 것이나 미수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1. 2. 26.

서울특별시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 : 1) 길동 459 의 9 앞

광장

2) 성내동 449 의 22

앞 가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광장 및 가각) 정비공사

다. 사업개요 : 1) 시행면적 : 3,733.8

(1,129.5 평)

2) 아스팔트포장 : 18,48

3) 하수도시설 : 120a

4) 기타부대공 : 1 식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 개

년간

◎ 서울특별시 공고제 53 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 조 1 항에 의거 제조업 전부를 폐지하고 제조업 허가를 자진 단념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1. 2. 27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업종명	소재지	대표자	제조구분	취소사유
1-35-75	대회건설공업사	강서구염창동 28	이용현	전선류 제조사업	자진 단념

◎ 동대문 공고제 64 호

공인 개각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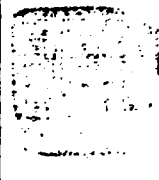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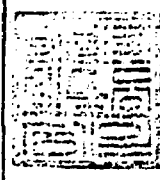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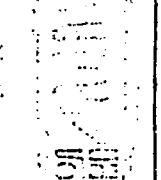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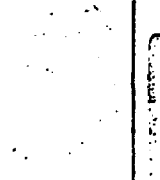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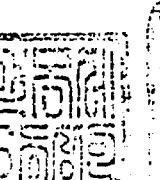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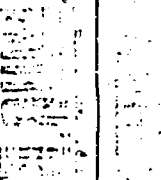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 직인 및 제인을 개각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1. 2. 28

동대문구청장

1. 사봉개시 및 제인일자 : 1981. 3. 1
2. 공인명 : 답십리계 4 동, 이문계 1 동, 면북계 4 동, 강우계 1 동장의 직인 및 제인

3. 공인인영				
인 영	폐기인	개각인	폐기인	개각인
				
공인명	담심리제 4동장 직인		이문계 1동장의 직인 및 제인	
인 영	폐기인	개각인	폐기인	개각인
				
공인명	면북제 6동장의 직인 및 제인		망우제 1동장 직인	
<p>● 강남구공고제 34 호</p> <p>공인 개각사봉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6 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장직인 및 제인을 개각 사봉 승인하였기 동조제</p>				
<p>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1. 2.2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p> <p>1. 개각사봉개시일 : 81.3.2 09:00 2. 공인개각등 : 잠원등 3. 공인인영 :</p>				

인 영	제	인	개	인
공인명	잠원동장의 직인 및 제인			
<p style="text-align: center;">사 령</p> <p>◎ 1981년 2월 20 일</p> <p>서울시정나군 지방행정사무관시보</p> <p>내무국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p>◎ 1981년 2월 23 일</p> <p>수원시설과 김진배 지방토목기과</p> <p>지하철운영사업소 시설관리과장 직무 대리</p> <p>주택관리과 홍선광 지방건축기과</p> <p>마포구 도시정비국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p>		<p>◎ 1981년 2월 23 일</p> <p>성북구 김배식 지방토목기원보</p> <p>부직을 명함. 2포봉을 급함. 구로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p>◎ 1981년 2월 25 일</p> <p>의안과 김기창 지방환경사무관</p> <p>아동병원 파견 근무를 해제함.</p> <p>서울특별시장</p> <p>◎ 1981년 2월 25 일</p> <p>공무원교육원 김지국 지방환경사무관</p>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서울특별시장

◎ 1981년 2월 27일 어린이대공원 민건설 지방행정서기보

부직을 명함.
심동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성명	발령사함		현부서	직급
	부서	직급		
김애람	부녀과부녀지도계장	지방행정사무관	부녀과	지방행정주사
김분란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건축기과	영선과	지방건축기사
박봉서	.	.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이광수	공무원교육원	.	지하철건설본부	.
이종두	.	.	도봉구	.
정낙환	중로구	지방행정사무관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시보
안희옥	부녀과부녀보호계장	.	부녀과	지방행정사무관
국규환	청소년과청소년부지계장	.	부녀지도계장 공무원교육원	.

1981. 2. 28

서울특별시장